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III

# 인터넷 명예훼손, 대책은 없나?

주최 : 국회의원 **장 윤 석**

주관·후원 :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재)여의도연구소



# 목 차

◎ 발 제	김 근 우(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5
◎ 토 론	이 지 호(포털피해자모임 변호사) .....	27
	이 종 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	35
	민 홍 석(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41
	강 경 완(nate.com, 싸이월드 고객센터팀장) .....	53
	홍 석 천(탈런트) .....	57
◎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발 제】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김 근 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김 근 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I. 서론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라는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말이 등장한지 꽤 되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인터넷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도 현재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는 무려 1,200만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상당한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교차되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와 사회 분야의 범죄가 심각하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는 명예훼손침해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범죄는 기존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빠른 전파력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전자게시판, 댓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 기존의 형법과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형사적 그 침해 및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제가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 예방에 대한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공간(카페, 블로그,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댓글 등)인데 이러한 공간을 운영,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예방 및 침해와 구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MEMO

## II.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현황 및 실태

인터넷상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댓글을 보면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통계와 범죄유형, 그리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공간(홈페이지, 게시판, 카페, 블로그, 댓글 등)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이버 범죄현황

사이버범죄 유형은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의 경찰청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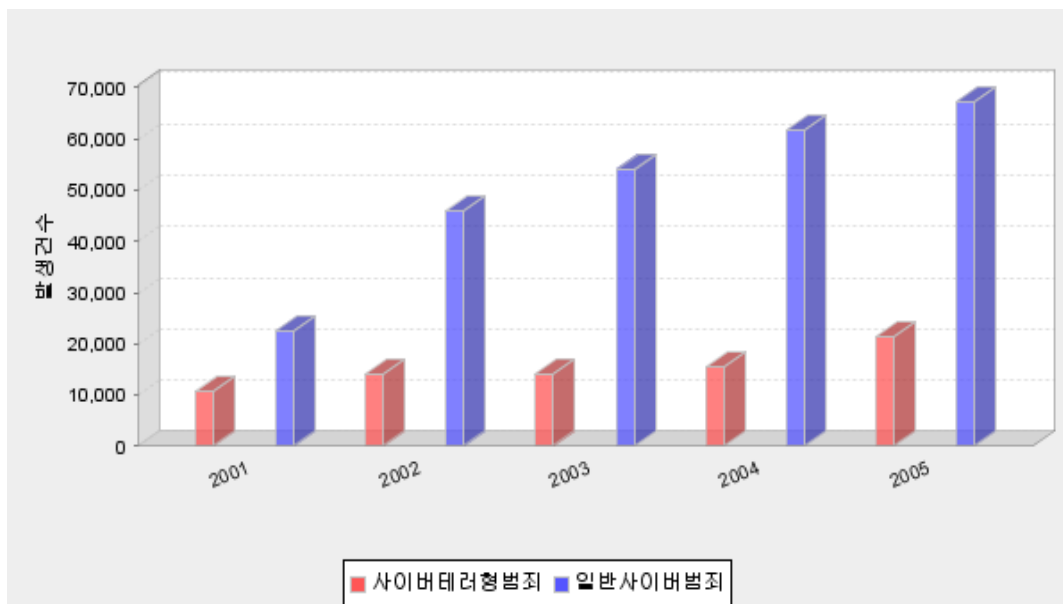


그림 2 경찰청 학술자료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sup>1)</sup>	일반사이버범죄 <sup>2)</sup>
2005년	88,731	21,389	67,342
2004년	77,099	15,390	61,709
2003년	68,445	14,241	54,204
2002년	60,068	14,159	45,909
2001년	33,289	10,638	22,651

표 3 : 2006. 본 자료는 경찰청 학술자료([http://www.npa.go.kr/pds/pds\\_index.jsp](http://www.npa.go.kr/pds/pds_index.jsp); 12월 12일 방문)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성폭력	기 타
2001	24,455	8,099	926	9,141	1,312	722	<b>1,668</b>	5,587
2002	41,900	9,707	1,964	19,395	1,778	862	<b>2,762</b>	5,432
2003	51,722	8,891	2,015	26,875	677	1,719	<b>2,976</b>	8,569
2004	63,384	10,993	2,065	30,288	1,244	2,410	<b>3,070</b>	13,314
2005	72,421	15,874	2,889	33,112	1,233	1,850	<b>6,338</b>	11,125
2006.6	34,102	8,251	1,254	14,036	1,091	953	<b>3,824</b>	4,693

표 4 사이버범죄 범죄통계(2006.6.30): 경찰청 학술자료([http://www.npa.go.kr/pds/pds\\_index.jsp](http://www.npa.go.kr/pds/pds_index.jsp); 12월 12일 방문)

##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실태<sup>3)</sup>

### 1) 홈페이지 형태의 명예훼손

#### (1) 홈페이지<sup>4)</sup>

- 1) 사이버테러형 범죄란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 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 2) 일반사이버범죄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 3) 본 실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술자료 참조 하였다.(2006. 12. 15 방문; <http://www.icec.or.kr/>).

<사례>

경상북도 ●●군은 자신의 군(郡)에 대한 홍보와 안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가 2001. 4. 23. 12:14경 A1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씨에게 묻고 싶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사건, △△군부군수 재직시 금품수수, 감사 명목의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의 글을, 2001. 4. 24. 20:56경 A2명의로 위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씨의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같은 날 21:25경 B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 사실과 관련한 1992. 10. 24.자 경북일보, 1992. 10. 25.자 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각 게시하였고, 이에 ○○○은 2001. 4. 24. 03:24경 위 ‘방명록’란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1이 질문한 성추행 의혹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2001. 4. 27. 00:58경 위 ‘칭찬합시다’란에 ‘무책임한 명예훼손에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A2 명의의 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리고 2001. 5. 7. 14:30경 답답해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군의 자질문제’라는 제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2001. 5. 8. 11:01경 대박 명의로 위 ‘칭찬합시다’란에 ‘○씨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B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그 무렵 청사인 명의로 위 ‘방명록’란에 ‘A1님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A1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각 게시되어 ◇◇◇가 ○○○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사례>

대학교 선거의 2번 후보자인 피해자 ○○○에 대하여 상대후보 측 ○○○가 “..○○○의 꼭두각시○○○. 학교를 얼마 다니지 않는 1,2학년들은 그의 정체를 모를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빈라덴, 후세인 업그레이드 결정판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2번 후보의 참모장인 ○○○에 대하여 역시 학교게시판을 통해 “참모장 ○○○는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다. 선거전 다른 후보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다음 그 돈을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치나 공약을 주고 선거당선을 시키게끔 도와주겠다는 것들은 이글을 읽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2번 후보의 참모장인 ○○○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

4) ‘홈페이지’란 “웹 사용자에게 홈페이지는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웹 페이지를 말한다. 웹사이트 개발자의 입장에서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웹상에서 어떤 사이트를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웹 페이지를 말하며, 기업에서 홈페이지는 그 회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며, 제품전시실도 되며 전 세계인을 위하여 가상세계에 설치한 사무실이기도 하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라면 수익 명의 네티즌(netizen)과 교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라 할 수 있다”(http://dic.naver.com).

<사례>

학부모 000가 초등학교 교사 000에 대하여 욕과 허위사실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가 아닌 000가 교사 000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군에 속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교사 000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초등교사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MEMO

(2) 블로그<sup>5)</sup>

<사례>

가해자 000씨는 별거중인 남편 000의 블로그에 “000가 폭행하여 아이가 유산되었다”라고 하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올리며 짐승, 동물 등의 말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남편 000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안.

<사례>

가해자 00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000씨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의 블로그 방명록에 “싸가지, 싹통머리없는 년, 지랄한다, 반쪽짜리 인간” 등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

<사례>

가해자 000씨는 피해자 000씨와 교제해 오던 중 피해자가 교제를 끝내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 상에 “티비프로에 나온 알콜중독자를 보니 그 여자 생각난다.....나이 많고 학교도 이제 졸업한 주제에 카드빚까지 엄청나다는 등...재산은 집한채 있는 수준인데 자기네 집이 예전에 부자였다며 늘 인생을 한탄한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5) 블로그란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日誌)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이다. 웹 게시판, 개인 홈페이지, 컴퓨터 기능이 혼합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무료 또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블로그 페이지만 있으면, 누구나 텍스트 또는 그래픽 방식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올릴 수 있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이다. 세부 기능은 ① 일기처럼 날짜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다. ② 완벽한 자료 관리가 가능하다. ③ 독자적인 자료 보관이 가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④ 일반 커뮤니티의 게시판과 달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많은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동조자가 생겨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남이 만든 블로그에 가입할 수도 있다. ⑥ 채팅이 가능하며, 특히 채팅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블로그 페이지에 기록된다. ⑦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갈수록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상업적인 제약 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언론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 (3) 미니홈피<sup>6)</sup>

#### <사례>

군복무중인 친구000로부터 000에게 전화가 와서 “군대후임의 여자친구가 실수로 임신을 하였는데 낙태 수술하러 가는데 따라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000의 남자친구가 알고 불쾌해 하던중, 군복무중이었던 친구 000가 000의 미니홈피에 글을 남긴 것을 보고 000의 남자친구가 “아직도 연락하는냐”며 화를 내고, 군복무중이었던 친구000의 미니홈피에 “니는 아직도 니 아는 여자애 애떼러가는데 따라가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나? 그렇게 살지마라...연락하지 말랬제?”라는 글을 게시하여 군복무중인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 <사례>

가해자 000는 피해자 000의 미니홈피에 000의 사진에 컴퓨터로 눈을 도려내고 얼굴에 엑스자를 그어놓는 등의 합성을 하여 “누구한테는 돈주께 밤보내자고 했다면서 ㅈ르이네 똑바로 살아. 온갖여자한테 짹적거리느구만 보아하니 카사노바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000에 대한 비방성 사진 및 글을 게시.

#### <사례>

가해자 000는 피해자 000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000의 과거의 남자다. 00와 몸을 섞었다. 너희남편은 그 사실을 아냐? 너희 앞날도 뻔하다. 니 남편이 병신아니냐?”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000의 과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 2) 커뮤니티 형태의 명예훼손

### (1) 카페(클럽)<sup>7)</sup>

#### <사례>

△△카페의 00동호회 회원들에 대해 그에 대비되는 동호회 회원 000가 “000카페의 아이디 0000는 실제로는 성격이 엄청 나쁜놈이고, 여자관계도 복잡하고 밝히

---

6) 미니홈피란 “네티즌이 직접꾸미고 서로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네티즌간의 인맥을 형성하는 1인 미디어이며, 블로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싸이월드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7) ‘카페’란 흔히 인터넷 카페라고도 하며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게시판의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다음([www.daum.net](http://www.daum.net))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 네이버 등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싸이월드의 ‘클럽’, 파란의 ‘클럽’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주제별로 분류되어 회원 관리가 되고 카페 랭킹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일반 인터넷 게시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개념도 없는 나쁜놈이다. 000카페에서의 별명은 00인데 사진보면 생긴것도 이상하다”, “000카페의 000(닉네임)은 XX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 사람의 홈페이지를 가 보면 짜질하고 소심한 바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디 000는 애인한테 버림받았다”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000동호회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MEMO

<사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000에 대해 옷을 구매한 000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000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옷의 아랫단중 반이 박음질이 안 되어 있다, 지퍼가 바깥으로 빠져나왔고, 지퍼도 안 잠긴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000가 반품을 하라고 하자 세탁소에 맡겨서 안 된다고 하고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 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사실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000가 이해가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답글을 게시하자 이를 삭제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000가 000의 학교 과 카페에 000에 대하여 “그녀”라고 지칭하면서 이중성격에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자신과의 예전관계에 대하여 스킨쉽과 성적인 관계까지 언급함으로써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학교특성상 과 정원이 적고, 과 카페에 올린 글로써 글을 보면 누구든지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2) 댓글<sup>8)</sup>

<사례>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기사 댓글로 “제국의 아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000가 “여대생이 그렇게 한심하게 뒤진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 생각엔 걸레라서 그녀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언제한번 벌주겠다고 생각해

8) ‘댓글’이란 덧붙인 답글이라는 뜻을 지녔음. 흔히 인터넷상에 꼬릿말로 불리는 reply 기능을 말함 요즘은 reply의 크기에 따라 ‘댓글’; ‘덧글’ ; ‘답글’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짧은 글에는 ‘댓글’본문과 글자 수가 비슷한 문장에 본문과 같이 보이면 ‘덧글’전자메일처럼 본문과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을 ‘답글’이라고 사용하고 있다(<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13556>).

서 집단강간...여자는 온몸이 정액범벅이 된채로..더러운 것이 하는 년에게 어울리는 죽임..남자들의 심리로..더러운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봉사하는 벌을 준다는 의미, 뒤진 논 애미도 젊은 시절에 남자들ㅇ게 아랫도리 많이 돌려가면서 애 키웠을 듯..구더기가 기어나오는 버지를 벌름벌름거리며..”라는 글을 게시하여 死者와 그 어머니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사례>

가해자 000씨는 피해자 000씨로부터 인터넷 장터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차량 부품을 구입하였는데 물품에 하자 있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동 게시판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글에 댓글로 “병신 염병을 하고 있네....미친새끼 걸레 받으면 글 삭제하구 썩새야 알았냐? 호로새끼 애새끼 하는짓하군 꼭 지같이 널구 있네”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사례>

가해자 000는 04. 2. 24일 모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에서 “000야. 너 친일파 자손이잖어. 물론 넌 지금 친일파는 아니구.. 니할배, 고조할배 친일경력 있어요.. 후지무라 상이 증언했고.. 니할배 빨갱이들에게 죽창맞아 뒤졌잖아.” 라는 허위내용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 000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는 대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서비스수용자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행하여진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정보를 쉽게 올리고(up-load), 복제 및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이처럼 여러 곳에서 명예훼손적 행위가 행해진 경우 직접적 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을 것이나, 인터넷의 특성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그 명예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거나 증거보전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개체(사이트)를 제공·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추세가 여러 나라<sup>9)</sup> 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9)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독일은 ‘연방정보통신사업법(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제1장 제5조’; EU의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문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권고안(The Directive)2장4절’;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개념은 다양한 표현으로 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 영역에 따라 그 범위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 제1호)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위험정보유통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공간에 위험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나타난 점들을 토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한다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자신의 서버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자”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인터넷사업자, 홈페이지 운영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MEMO

## 2. 형사책임

### 1) 형법

형법은 제307조 제1항에서 일반적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308조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 그리고 제309조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307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은 ‘공연성’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진실의 사실 적시’이냐, ‘허위사실 적시’이냐를 구분하여 형량을 달리하고 있으며, 제308조는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09조는 ‘공연성’, ‘진실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외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더하고 있다.

10)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년 겨울, 109면

일반적으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통설이다.<sup>11)</sup> ‘불특정’이라 함은 사실의 적시행위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복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다수’를 의미한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인격·기술·지능·학력·경력·건강·신분·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를 의미한다.<sup>12)</sup>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의 적시’인데 이는 판례<sup>13)</sup>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판례를 보면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며, 사실의 적시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의견은 배제하고 i) 입증가능성, ii) 문제된 언어의 의미와 용법, iii)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iv)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이 그 판단기준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서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벌칙은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sup>15)</sup>

11)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184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187면; 배중대,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2, 258면.

12) 이재상, 전제서, 187면.

13) 대관, 1998. 3. 24, 97도2956 판결.

14) 정대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2005, 199-200면.

15)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 제1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3, 151면.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특별규정이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면 그에 따라 처벌된다.

(1) 구성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비위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sup>16)</sup>, 이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강도 내지 방향성,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전체내용, 표현방법 및 주변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7)</sup>

둘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판례<sup>18)</sup>도 같은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특성상 높은 전파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특히 요구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유포시키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공연성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 전달을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sup>19)</sup> 따라서 개인간의 전자메일에 의한 경우에는 단순한 통신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송신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PC통신, 인터넷의 전자게시판,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게재 등 커뮤니케이션이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수단에 의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

넷째,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데이터의 보관·관리를 하는 서버가 국내에 있는가와 국외에 있는가에 따라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행위지와 결과

MEMO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7) 정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2003, 3/4월호), 12면 참조, 박광민, 전계논문, 157면 재인용.

18) 대판, 1996. 7. 12, 96 도 1007.

19) 박광민, 전계논문, 157면.

발생지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편재설<sup>20)</sup>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링크를 연장하는 행위의 가벌성이 문제된다. 링크를 연장하는 행위는 ‘퍼온 글’과 달리 다른 홈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를 참조하는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링크운영주체와 매개수단자의 관계에서 공연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내용을 이루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공연성이 없다면 불가벌이 될 것이다.<sup>21)</sup>

### (2) 위법성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요건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배제되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도 형법 제310조가 배제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에 있어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회귀하게 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도 가능하므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sup>22)</sup>

### 3)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61조를 보면 기존 형법 제309조에 ‘공연성’요건을 추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기존 형법 제309조와 법리상의 차이점이 거의 없으므로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자율적인 검열 및 통제의 확대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산업의 위축을 고려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고 그 외의 구체적 사정, 삭제 또는 차단조치의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행위가능성을 판단하여 부작위범의 성립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부작위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지우자는 견해<sup>23)</sup>와 형사법상의 범죄이건, 특별법상의 범죄이건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당해 행위자가 아니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도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한다.<sup>24)</sup>

20) 범죄지의 결정에 관한 편재설의 자세한 설명은 김성규, “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형사법연구 제18호, 192면 이하 참조.

21) 박광민, 상계논문, 159면.

22) 박광민, 상계논문, 160면; 정대관, 전계논문 208면.

23) 박광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118면.

24) 정대관, 전계논문, 211-212면 참조.

### 3. 민사책임

MEMO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달리 보이지는 않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이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첫째, 가해행위로서 명예훼손행위가 행해지고, 둘째, 명예훼손행위가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셋째, 그 행위의 위법성이 판단되고, 넷째,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민법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례<sup>25)</sup>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을 감경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공간)를 제공한 자이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이나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사업자인 포털사의 민사책임을 다소 확장하여 인정하였다.<sup>26)</sup>

25) 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판결.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2005가단18300 판결.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000000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000000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000000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이 사건 기사가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큰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다만,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후 50여분이 지나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 점, 기사 수정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민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는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법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sup>27)</sup>

#### IV. 개선방안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한 여자가수 ‘유니’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가수 유니의 자살기사보도를 낸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유니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댓글 차단공지를 냈다. 그리고 유니의 유족은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만일에 유니의 유족이 유니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악의적 댓글에 대해 법적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유니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몇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숫자는 수십 명도 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댓글을 쓴 네티즌 중에 유니가 생존해 있던 당시부터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유니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쓴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유니가 생존했던 당시부터 유니와 서로 감정에 골이 깊어져 유니의 사망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악의적 댓글을 쓴 네티즌 중에 자기가 쓴 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27)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년의 사망기사에 댓글을 쓴 대부분이 아마도 십대 청소년이나 20대 정도라고 고려할 때, 단순한 댓글 하나로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업체가 포털이용자들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뉴스제공서비스, 개인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공간(카페, 클럽,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포털업체들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자율적 예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sup>28)</sup>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예방·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포털사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법제도적 차원의 예방 및 구제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포털업체)의 이용약관의 보완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인터넷사업자(즉, 포털업체)들의 서비스, 블로그, 카페 등의 이용약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포털서비스 이용약관

#### (1) NHN(네이버) 이용약관

제 10 조 (회사의 의무):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

28) 네이버가 250여명. 다음이 150~200명의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24시간 3교대로 하루 종일 필터링을 한다. 이들 유명 포털이 한 달에 삭제하는 악플만도 수십만개다. 전체 직원의 20~25%가 악플퇴치에 매달리다보니 인력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다. 포털들이 악성 리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내부의 금칙어 규정에 어긋나면 보는 즉시 삭제한다. 금칙어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 글쓰기 제한의 칼도 빠르다. 실명제를 도입한 네이버의 경우 삭제 대상의 글을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악플러의 아이디(ID)는 1주일 동안 글쓰기를 할 수 없다. 해당 ID와 같은 주민번호로 등록된 모든 ID에 적용된다. 악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은 악플 3회 이상시 아이디나 아이피를 차단한다. 아이디 차단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는 지속적인 악플 및 도배자는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전체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http://isplus.joins.com/news>, 2007. 1. 26).

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Daum 서비스 약관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로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엠파스 서비스 약관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및 정책 등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21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②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제24조 제1항 각 호, 제35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지, 이용정지, 이용자 ID삭제 등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제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8. 형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 관련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서비스 이용 중 사회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카페 이용약관

### (1) NHN(네이버)

제 3 조 (카페 개설 및 자진 폐쇄):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내용 게재 목적
2.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내용 게재 목적
4.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 피해를 주는 내용 게재 목적

제 6 조 (카페의 게시물 및 자료의 삭제)

- ① 카페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카페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 ② 카페의 게시물과 자료의 공개권한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 및 자료 작성시 다른 멤버의 블로그에 담기를 허용하는 권한도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카페 멤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카페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카페 매니저와 스텝은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멤버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카페 매니저는 해당 멤버를 불량멤버로 분류하여 카페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의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내용
- 2.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내용
- 3. 저속하고 음란한 자료 및 내용
- 4.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 피해를 주는 내용

(2) Daum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3) 엠파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회사가 정한 제반규정 및 정책 등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블로그 이용약관

(1) 네이버

제8조 ( 회원의 게시물 ): ① 게시물이라 함은 각자의 블로그에 회원이 올린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타인의 블로그에 올린 댓글, 블로그 운영게시판에 올린글등을 포함합니다.

MEMO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블로그 서비스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전송,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2) 애플스

제 8 조 (개설자의 권리·의무) ① 개설자는 블로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개설자는 블로그 개설취지 및 서비스 운영취지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재를 제한, 거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③ 개설자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게시물이 블로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한 회원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라.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게시물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제 9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저속·음란한 내용인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 전송, 링크시킬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다.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위에서 살펴본 인터넷사업자(포털업체)의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클럽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포털사와 사이트관리자(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클럽 등) 혹은 일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규정을 보면, 인터넷사업자(포털사)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이용약관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sup>29)</sup> 그러므로 인터넷사업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포털사와 관리자 내지 이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sup>30)</sup>

MEMO

## 2. 명예훼손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협의체 조직

인터넷상(전자게시판, 블로그, 카페, 클럽, 뉴스보도 댓글 등)에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은 하루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이러한 게시물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인지를 24시간 감시한다든지,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명예훼손 침해 여부를 판단·통제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인적한계가 있다. 또한 명예훼손 침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와 민사적 구제도 필요하다. 이를 한 기관이 전담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포털사) 3자의 공조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예방과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공간이 명예훼손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의 2006년 검색광고, 게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총매출액은 3천억원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1천 7백억원 정도가 검색광고 수익이며 2010년 검색광고 시장규모를 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규모의 광고매출은 포털사이틀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의존한다. 결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각종 부가서

29) <http://ethics.nate.com/Ethics/definition.jsp>; <http://www.naver.com/rules/disclaimer.html>. <http://right.daum.net/report.html> 참조.

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계논문, 196면.

31) 네이버 사업영역에 대한 사이트 참조; <http://www.nhncorp.com>.

비스 공간이 명예훼손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포털사들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이용약관의 문제점과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공간(매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의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본 협의체의 활동영역으로는 첫째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행위 유형과 그 피해 구제 방법 등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포털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네티즌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의식개선이다. 둘째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기술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개발활동이다. 셋째로 실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와 민·형사적 피해구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구조단의 활성화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단체와 이와 유사한 협의체<sup>32)</sup>를 구성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예방,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 3.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사업자의 민사책임 규정의 입법필요<sup>33)</sup>

인터넷사업자인 포털사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공간(매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방문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제재만 규정돼 있을 뿐 민사적 구제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사업자의 민사책임 규정의 입법을 통하여 인터넷공간에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사업자(포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32)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자문위원단(<http://www.cyberhumanrights.or.kr/center>).

3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계논문, 176면.

【토 론1】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책

이 지 호 포털피해자모임 변호사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책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수료
- 법률사무소 정률 대표변호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사업” 고문변호사
- “순천향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고문변호사
- “드라마 태왕사신기 프로젝트” 고문변호사

이 지 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률

## 1. 네티즌 개인 - 사이버실명제의 법제화(의무적 도입)

가. 사이버 실명제 : 사이버 실명제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통한 실명 인증을 한 후 로그인을 하여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효과 : 사이버 실명제는 네티즌이 책임 있는 글을 올리도록 유도하여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출처 : 백창현, “인터넷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다.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사이버 실명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1) 사이버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부정설) : 사이버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는 견해입니다.

(2) 사이버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긍정설) :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적 모욕적 발언 기타 범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실명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견해입니다(손경한 변호사).

MEMO

(3) 소결 : 의사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사전검열은 그 내용을 발표 이전에 통제하자는 것인데 반하여, 사이버 실명제는 그 내용을 발표 이전에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사이버실명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되 이를 실명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설에 찬성합니다.

## 2. 명예훼손죄, 모욕죄 안내 제도

가. 필요성 : 사이버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티즌이 글쓰기 등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창이 뜨도록 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내용의 글쓰기’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입니다.

나. 적용범위 : ‘글쓰기 또는 스크랩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안내하는 창이 뜨도록 합니다. 스크랩의 경우에도 위 안내창이 뜨도록 하여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스크랩에 의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창의 내용 : 안내창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란 ‘공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 3.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도입

(출처 : 백창현, “인터넷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인터넷 에티켓’, ‘명예훼손 및 모욕의 구체적 사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범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유년기,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아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이 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신고하기 버튼 제도)의 법제화

(출처 : 백창현, “인터넷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가. 신고하기 버튼 : 신고하기 버튼이란 ‘해당 게시물을 본 피해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게시물 읽기화면에서 클릭한 번으로 즉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버튼입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이 캡처(CAPTURE)되면서(증거 확보상 필요함) 신고자(거짓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 확인이 필요함), 피신고자, 신고시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타 신고이유(명예훼손을 했다, 욕설을 했다, 사기행위를 했다, 기타)를 선택 또는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재는 일부 채팅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필요성 :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삭제 요청 또는 신고를 하려면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글이라 하더라도,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의 경우에 ‘을’이 ‘갑’을 위하여 대신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법제화한다면, 모든 네티즌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적용범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 대하여는 신고하기 버튼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규모의 사이트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5. 포털 사이트 - 책임있는 의제설정의 확보

### 가. 문제점

포털사이트의 경우 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수천편의 기사 중 일부 기사를 선택하여 편집판에 올립니다. ‘편집판’ 특히 ‘뉴스란 1면’에 오른 기사는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확산됩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의 경우 속보성만을 강조하여, “명백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기사”를 편집판에 올리고, 추천 검색어로 선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는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나가며, 한번 실추된 피해자의 명예는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가 무책임하게 기사를 편집하고 추천 검색어를 선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가 신문사, 방송사에 준하여 책임있는 기사 편집권을 행사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시 : 포털사이트가 뉴스서비스를 하려면 \*\*\*명 이상의 편집 인원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기준.

### 다. 포털사이트의 추천 검색어 서비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추천 검색어 선정의 기준 및 메카니즘을 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포털 사이트가 마음만 먹으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추천 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크게 끌만하지만 그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경우”에, 포털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그 글 관련 키워드를 추천 검색어로 선정하여, 그 글이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천검색어의 자의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 검색어 선정의 기준 및 메카니즘을 공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라. 소결

인터넷 상에는 너무나 많은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의 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어떤 글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천 검색어로 선정하거나 ‘어떤 기사를 뉴스란 1면에 선정’하면, 그 글 또는 그 기사는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확산됩니다. 이렇듯 포털 사이트는 막강한 의제설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의제설정권력은 반드시 통제 되어야 합니다. 그 통제 방법으로서, 뉴스 편집권에 대한 통제, 추천 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통제 방안 및 통제 수위에 관하여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O



【토 론2】

# 사이버 명예훼손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응

이 종 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 사이버 명예훼손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응



- 1985.2. 밀양고등학교 졸업
- 2001.12. 제43회 사법시험합격
- 2002.2.~2004.1.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제33기)
- 2004.2.~2007.1. 법무법인 길 변호사(각종 송무 및 기업자문)
- 2007.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 이 종 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등 타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역기능(사이버권리침해)으로부터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위협에서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라 함)상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 1. 위원회 심의업무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제시하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의2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불법 및 청소년유해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취지·제공처, 정보제공 형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에 기준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명예훼손’,

MEMO

‘음란’, ‘불법·청소년유해정보’ 등이며,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인지도한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의 하고 있다. 심의유형은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이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보한다.

##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2007년 7월 27일 시행)

### 가.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가 신설된다(설립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

조정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며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공개적인 사과, 금전적 보상 등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건 당사자가 조정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조정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1인은 상근위원으로 4인은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정부는 당사자간의 의견과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에 근거한 명확하고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수락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만일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중에 발생한 모든 자료와 서류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 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조정부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분쟁조정 이외에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6).

정보제공 청구 이용방법은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및 취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실 등을 기재하여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면 되고, 이를 통해 정보제공 청구자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정보제공 청구결정을 통보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3.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07년 7월 예정)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이용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사이버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포털사이트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MEMO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은 권리침해의 경우 각 정보제공업체들의 약관이 상이하고 시대환경에 따른 통일된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대응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의 정립은 정보제공업체간 통일성을 가지게 하고,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등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권리침해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은 업계, 학계 등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후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 및 배포될 예정이다.

### 4.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위원회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를 두어 각종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 등 신청인은 상담을 위해 방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전화, 실시간 상담, 메시지(쪽지) 상담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위원회 신고·상담 민원부서 오후 9시 까지 야간근무 실시- '06. 12월부터).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에게는 피해구제와 관련된 상담 및

전문가(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사이버권리침해 피해구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조력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는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등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대응방법과 신고요령, 증거자료 수집 방법 및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작성하여 상담센터의 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 5. 임시조치(사업자)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한 경우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토 론3】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민 홍 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KBS 법률상담 자문변호사  
(KBS 제1TV ‘열린사회 시민광장’ ‘TV 신문고’ 법률상담프로 진행변호사)
- KBS 법률자문변호사  
(KBS 제2TV ‘공개수배 사건 25시’ 법률자문 변호사)
- 숙명여대 강사(법학)
- 한국사이버대학 겸임교수(법학)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민 홍 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MEMO

### I. 개관

#### 1.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

##### 가. 온라인 서비스의 익명성

온라인 서비스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의 발전을 가져와 유익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가 발전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사상의 자유시장(a marketplace of free ideas) 이론(시장 기능에 맡겨야)

- medium-specific analysis 이론(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1)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

그러나 이제 무분별한 내용의 게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이 입는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를 방관할 수는 없음.

(2) 자율규제로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이 안됨

- 즉시 반론, 항의 메일 발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표현물의 삭제, 접속 중지 등
- 이러한 수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원상회복되지 않음

(3) 실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표현의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함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당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는 없으며 그 취급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유사한 문제로서 성희롱과의 비교

성희롱도 결국 성차별에 의한 명예훼손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는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기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없음

- 이는 그 사회의 문화와도 관계가 깊음

나. 양방향 참여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는 양방향 참여미디어라는 점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이를 처벌 하기가 어렵다는 또 다른 근거로 보임

(1) 즉 과거 언론에는 사회적 약자가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인터넷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음

(2)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인터넷은 공중파방송의 일방적 영향력, 독점적 지위 등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형태의 미디어이므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인쇄물에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같거나 보다 강한 표현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문

- 미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

다. 결국은 사회상황과 정책의 문제

결국은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입법 상황

가. 형사법상

(1) 형법상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EMO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나)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동법 제61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죄(동법 제98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나. 민사법상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위헌

3.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법상의 처벌규정 등 입법 상황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미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음.

물론 정치적 마타도어가 더 난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는 정치와 다른 사회현상을 특별히 구별할 사유도 없음

(1) 동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내용

제1항 -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 정당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MEMO

제5항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함)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 (2) 동법 제261조 1항 (처벌규정)

제261조 제1항 - 제8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인터넷 언론사에 국한하고 있고, 인터넷 언론사를 처벌할 뿐 그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조치를 안한 것을 처벌하고 있고, 그 처벌명칭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비판의 글들이 있으나 이는 문제

-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위에 어떠한 것도 우월할 수 없다고 봄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과학도 인간을 종속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2007.7.27. 시행 예정)

## (1) 동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의 내용

제1항 -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가) 현재의 법률(2007.7.26.까지 유효)과 비교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내용

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위 개정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및 삭제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객관적인 정보의 공개를 넘어 명예훼손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이론에 따라 문제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견해 유

(3) 동법 제44조의 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의 내용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MEMO

제2항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항(신설) - 공공기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4) 동법 제44조의 6(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제1항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5) 처벌규정 유무

(가) 제44조의 2 처벌규정 없음

(나) 제44조의 5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미국의 경우

출판자(publisher), 배포자(distributer), 일반 전달자(common carrier)의 3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그 책임 인정

-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배포자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음.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자는 책임을 지나 배포자는 면책

- Communication Decency Act

- 미국의 입법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터넷의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2.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히려 완전면책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

### 가. 일반적인 책임요건

(1)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의 발생

(2) 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

(3)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 나. 대법원의 입장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을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

다만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예훼손적 글이 게시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III. 인터넷 언론기관의 책임

1. 인터넷 언론을 규율하기 위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정기간행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동법 제2조 등)

2. 편집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

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언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신문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종래의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이외에 정정보도청구권 새로 도입(동법 제2조)

나.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

IV. 안티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거의 동일

V. 결론

1. 언론기관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은 엄격히 구별해야 함

언론기관은 그 기관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그 매개적 위치에 있는 자. 따라서 언론기관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비록 그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무리이고 이는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임

2.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가. 영리목적의 수익자책임의 원칙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 때문에 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되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함

다. 입증책임의 전환

라. 정보개시청구권의 인정(당사자권으로서 보호)

마. 공동피고제도

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 실명제 도입



【토 론4】

# 발제문 토론

강 경 완 nate.com, 싸이월드 고객센터팀장



## 발제문 토론

강 경 완 nate.com, 싸이월드 고객센터팀장

- (주)싸이월드 기획팀
-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사업팀 운영파트장
- 現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고객센터팀장

MEMO





【토 론5】

# 발제문 토론

홍 석 천 텔런트



## 발제문 토론



- MBC <슬픈 연가>
- SBS <완전한 사랑>
- MBC <남자 셋 여자 셋>
- 영화 '퍼즐' 외 다수 출연

홍 석 천 텔런트

## MEMO